

1. 개정이유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추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건축물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의 경우에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면적 산정 기준을 개별 건축물이 아닌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결과의 전자우편 통지에 대한 사전동의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3조)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나.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임의시설에 포함(안 제6조)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16조)

-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의 증축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명확화
-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 신설(안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 마.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호서식)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및 전자우편 주소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 양식을 보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면적산정”을 “도시·군계획시설 명칭의 변경, 면적 산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1항제1호·제6호·제8호”를 “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9호”로 한다.

5.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제10조제1호 중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9호의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의2서

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연면적”을 “연면적(구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목을 기준으로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들의 연면적은 합산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창업자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 표를 합니다.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 등의 문서송달에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변경)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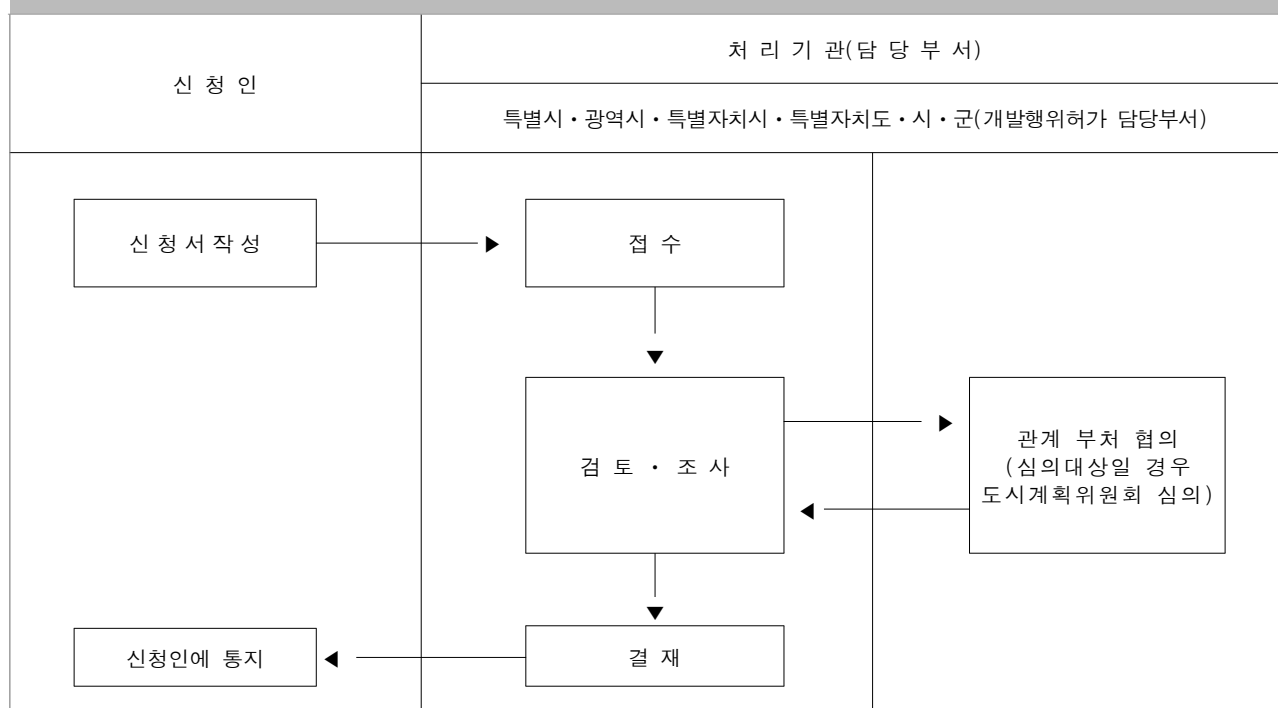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건축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 종류 및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선형시설의 경우 B= m ² , L= m)		
시행방법		시행기간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		
토지(건물) 소재 등	지번				
	면적				
	지목				
	권리명세 (소유 및 동의)				
자금조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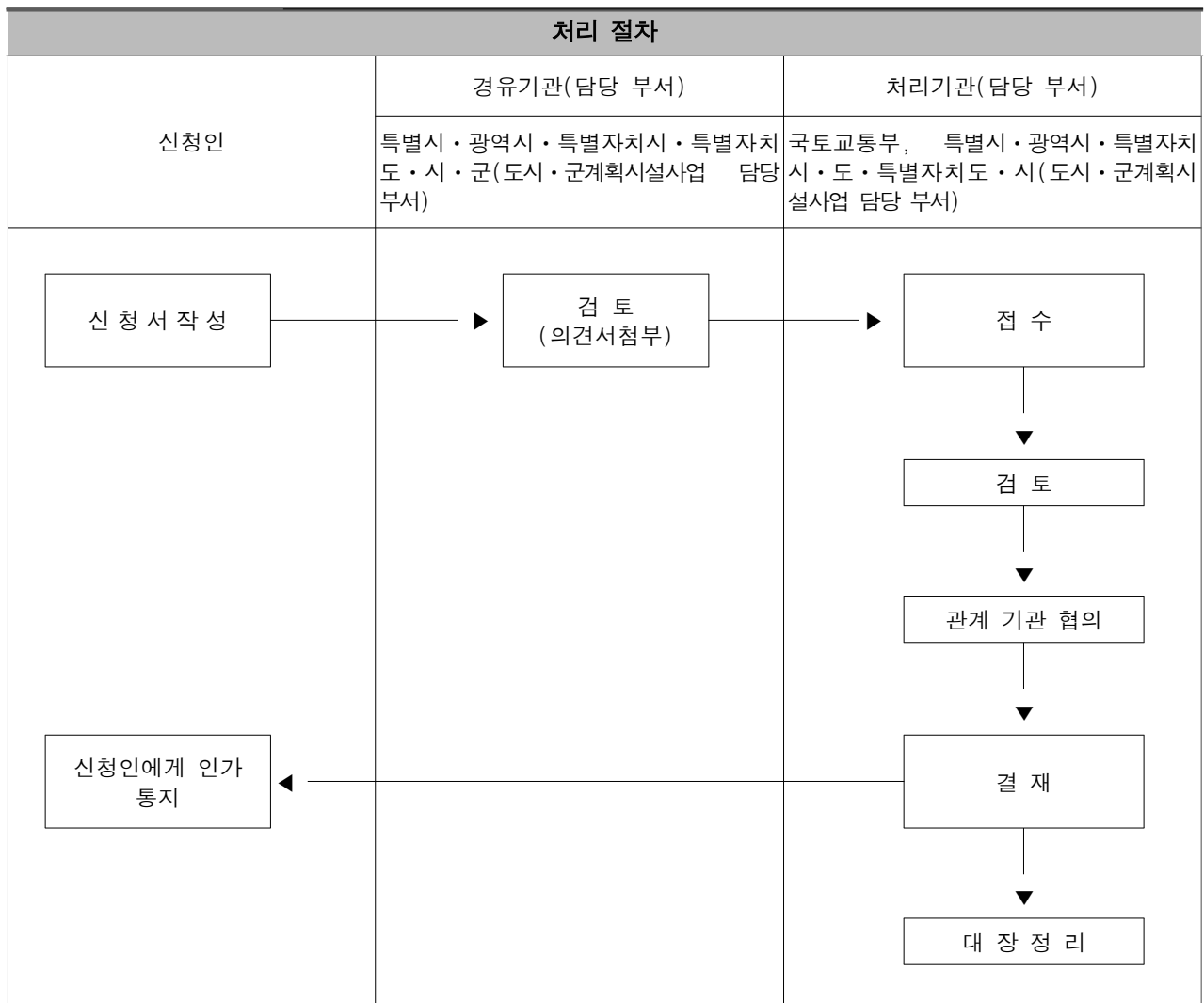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를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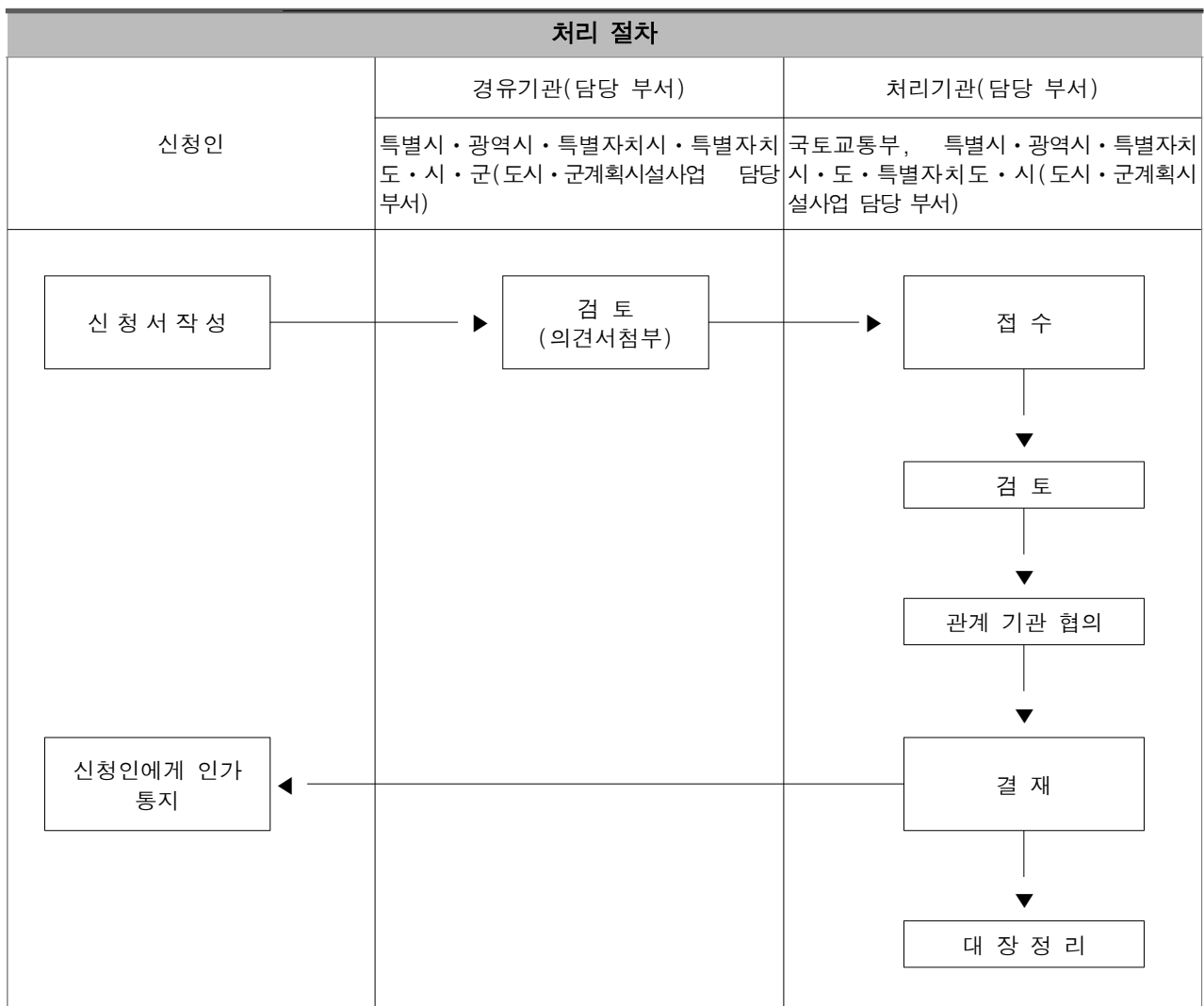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생략)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u>면적산정</u> 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4. (생략) ② ~ ④ (생략)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사항)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도시·군계획시설 명칭의 변경, 면적산정</u> ----- -----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8. (생략)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u> 도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10. ~ 12. (생략)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 ~ 4. (생략) 5. 제1항제1호·제6호·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생략) 제14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신설>	까지와 같음)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 ----- -----. 2.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9호-----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 ----- ----- -----. 1.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 ----- ----- 2.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①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9호의서식에 따른다.
--	---

(생략)

제15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5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
시계획인가신청서) -----

----- 별지 제9호의2서식

1. ~ 8. (현행과 같음)

